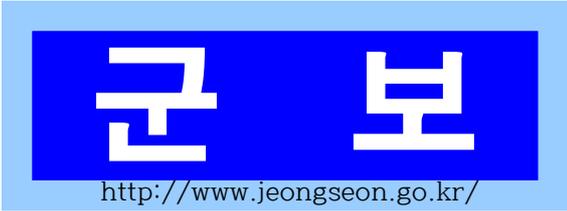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74호 2012. 8. 14. (화)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194호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정선군 규칙 제1195호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5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2-593호 2012.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8
- 정선군공고 제2012-598호 2012년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모집 공고 9
- 정선군공고 제2012-603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5
- 정선군공고 제2012-615호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6, FAX:560-2592)

규 칙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8. 14.

정선군 규칙 제1194호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을 “정선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직종·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 택)		근속기간	년 월	최 초 임 용 일	년 월 일
				근무상한 연 월 일	년 월 일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인 : 인사담당 (인)

정선군수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고, 굵은 선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u>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u>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u>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정선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 ----- <u>별정직 공무원</u>----- ----- ----- ----- -----.</p> <p>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 ----- ----- <u>별정 직공무원</u>----- ----- ----- -----.</p> <p>②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05.23.)과 관련하여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 개정
 -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정선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조례 본문 중 “고용직공무원” 삭제(제1조 및 제2조)
- 별지 제1호서식 중 “고용직공무원” 삭제(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8. 14.

정선군 규칙 제1195호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1998. 11. 21 조례 제929호)

개정(2005. 06. 09 규칙 제106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의 설치심의)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제출하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심의기준)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2-593호

2012.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2012년 8월 3일

정 선 군 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기간내에 열람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시기준 : 2012년 6월 1일 기준

2.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2년 8월 3일 ~ 8월 23일(20일)

○ 장 소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대 상 : 2012.1.1~5.31사이 토지의 분할·합병과 주택 신축등이 발생한 주택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7-14번지의외 134호주택

○ 내 용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 의견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 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함.

4. 개별주택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560-2149)연락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2-598호

2012년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모집 공고

정선군에서는 생활이 어렵고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의 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2012년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2년 7월 일
정 선 군 수

2012년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요강

I 장학생 모집

- 1. 접수기간 : 2012. 7. 30 ~ 8. 15
- 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주민생활지원팀
- 3. 지원자격 : 대학생 (4년제, 2년제)

가. 일반장학생

- ① 국민기초생활수자
- ②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자

나. 특별장학생

- ① 국민기초생활수자
- ②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 최근 1년간 전국 규모의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 현저히 타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한 자
 - 기타 군수가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부장 또는 학장·총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정의

-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②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④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4. 제한기준

-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보조를 받을 경우 제외한다.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출서류

가. 일반장학생

-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입학증명서 1부
-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단, 복학생의 경우 복학 직전의 학기 성적증명서)

나. 특별장학생

-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입학증명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단, 복학생의 경우 복학 직전의 학기 성적증명서)
- 전국대회 입상자는 상장 등 입상증명 서류 1부
- 학부장 또는 학장·총장이 추천한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증빙서류 1부 (현저히 타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한자 및 기타 군수가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함)

II 장학생 선발

1. 선발기관 : 정 선 군
2. 선발인원 : 15명 내외
3. 선발일자 : 2012년 9월중
4. 선발방법 :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년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신청 학생의 성적과 가정형편, 재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심의 결정

III 장학금 지급

1. 지급액 (연간) : 2,000천원
2. 지급시기 : 2012년 9월중
3. 지급방법: 장학증서 수여 후 보호자(본인) 계좌 입금

IV 기타사항

1.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합니다.
2.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 타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진출하였을 때
 -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3. 장학생 지원서식은 정선군청 홈페이지(www.jeongseo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33-560-2965) 또는 읍·면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일 반 장 학 생 추 천 서

- 1. 주 소 :
- 2. 학교명 : 학교 학부(학과) 학년
- 3. 성 명 : (한문) 성별 : 남 여
- 4. 주민등록번호 :
- 5. 생활상태

기초생활수급자	농민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비고

※ 기타저소득은 직업명을 기재

- 6. 타 기관 및 독지가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 여부
: 받고 있음() 받고있지 않음()
- 7. 추천이유(서술식 기재-자세히)

위 학생을 정선군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 면 장(직인)

- 첨부 1) 성적증명서 1부(※ 직전학기 기준, 단 복학생의 경우 복학 직전학기 기준)
- 2) 재학증명서 1부

정 선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특 별 장 학 생 추 천 서

- 1. 주 소 :
- 2. 학교명 : 학교 학부(학과) 학년
- 3. 성 명 : (한문)
- 4. 주민등록번호 :
- 5. 타 기관 및 독지가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 여부
: 받고 있음() 받고있지 않음()
- 6. 추천이유(서술식 기재-자세히)

위 학생을 정선군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교수 : 학부(학과) 교수 (인)

○ ○ 학 교 장(직인)

첨부 : 재학증명서 1부.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12-603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법적근거
 - 「정선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및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및 시행규칙」
3. 개정취지
 - 「정선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의 개정 <2012.05.30.> 으로 군민의 날이 매년 10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중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와 관련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군민의 날 행사시 향토민상 시상상을 추진하고자 함.
4. 개정 주요내용
 -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기간 변경(안 제3조 제3항)
 - * 기존 매년 8월 중에 실시하던 추천공고를 매년 4월 이전으로 개정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233-804)
- F A X 제출 : 033-560-2590
- 문의전화 : 033-560-2242

- 붙임 : 1.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발췌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매년 8월 중에 실시한다.”를 “매년 4월 이전에 실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③ 조례 제5조 제2항의 수상후보자 추천공고는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8월 중에 실시한다.</p>	<p>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③----- ----- -----4월 이전에---- ---</p>

관계법령 발췌

『정선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개정 2012.05.30.>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제4조(시상등) ① 향토민상은 연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개정 2008.05.19.>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상시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2-615호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1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적근거

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가. 상위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명 및 조례 근거 조항변경을 반영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개정 주요골자

가. 시행규칙명 변경(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1)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정선군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정의 개정(안 제2조)

1)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재원을 말한다.

2) “기금사업”이란 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기금사업자”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 개정(안 제4조)

- 1) 제4조 중 “다음 각 호와 같이”를 “20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 4)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농업축산과 (우편번호 233-804)

○ FAX 제출 : 033-560-2599

○ 문의전화 : 033-560-2376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명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를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재원을 말한다.
2. “기금사업”이란 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기금사업자”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 중 “다음 각 호와 같이”를 “20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본문·제5조 제목 및 제1항·제6조제1항 및 제2항단서·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 본문 중 “농안기금”을 각각 “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신 청 자

생산자(단체명)		형 태	
성명(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영 농 경 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2.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장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부담)	자 부 담	
		확보방법	
사업내용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 업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사 업	작물(m ²)			
재산현황	자 산	백만원	부 채	백만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부담)			
사 업 비 세부내역				
기대효과				
예상소득				

【별지 제3호서식】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우선순위 추천

1. 지원사업 총괄

구 분		분야별	계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 산	임 업
		계					
건 수 (건)	계						
	개 인						
	단 체						
지원액 (천원)	계						
	개 인						
	단 체						

2. 사업별 내역

추천 순위	사업별	신 청 자		생년월일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주 소	성 명			계	보 조	자부담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4호서식】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1. 성 명 : (생년월일 :)
- 2. 주 소 :
- 3. 변경사유 :
- 4. 변경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내 용	사업비	사 업 내 용	사업비
사업 내용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원사업 관리카드

【사업 일련번호 : 】

사 업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주소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			
사업기간				
사업계획	○ 착공일자 :			
	○ 준공일자 :			
세부사업내역 및 특이사항				
사진대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p> <p><u>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농안기금</u>”이라 함은 <u>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u>을 말한다. 2. “<u>농안기금사업</u>”이라 함은 <u>농안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u>을 말한다. 3. “<u>농안기금사업자</u>”라 함은 <u>농안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u> <p>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u>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u>(이하 “<u>위원회</u>”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p><u>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이란 <u>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재원</u>을 말한다. 2. “<u>기금사업</u>”이란 <u>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u>을 말한다. 3. “<u>기금사업자</u>”란 <u>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u> <p>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 <u>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u>-----</p> <p>② ----- --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 군수는 <u>농안기금</u>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원활하게 지원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농안기금</u>지원계획 및 신청기간을 <u>다음 각 호와 같이</u>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은 당해연도 1월중에 20일간 공고한다. 2.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20일간 공고한다. 	<p>제4조(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 ----- <u>기금</u>----- ----- ----- <u>기금</u>----- ----- <u>20일 이상</u> ----- ----- <u><삭 제></u> <u><삭 제></u></p>
<p>제5조(<u>농안기금</u>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① <u>농안기금</u>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u>농안기금</u>지원신청 하여야 한다.</p>	<p>제5조(<u>기금</u>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① <u>기금</u>----- ----- ----- <u>기금</u>지원신청 하여야 한다.</p>
<p>제6조(사업계획 변경) ① <u>농안기금</u>사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기에 의거 관할 읍·면장에게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u>농안기금</u> 증액을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다.</p>	<p>제6조(사업계획 변경) ① <u>기금</u>----- ----- ----- ----- ----- ----- ② ----- ----- ----- <u>기금</u> ----- -----</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신고) ① <u>농안기금</u>사업자는 <u>농안기금</u>사업을 개시·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읍면장은 사업개시·완료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u>농안기금</u>의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사업관리) 군수가 <u>농안기금</u>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지원자별로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여 사업진행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제7조(신고) ① <u>기금</u>----- <u>기금</u>----- ----- ----- -----.</p> <p>② ----- ----- <u>기금</u>----- ----- -----.</p> <p>제8조(사업관리) --- <u>기금</u>----- ----- ----- -----.</p>

관 계 법 령 발 취

□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기금의 신청)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3조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에서 적정하게 대상자 및 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은 자는 용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시 용자를 받을 수 없다.

제14조(사업대상선정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지원대상자(농업법인 및 작목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결정 사실과 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